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조지연 · 고동진  
박준태 · 박충권 · 김승수  
이인선 · 윤한홍 · 김미애  
김성원 · 김예지 · 강선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.

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,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5호아목6) 신설 등).

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아목4) 중 “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”를 “6세”로 하며, 같은 목에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커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 
급여로서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

6)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종교단체  
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커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6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처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) ~ 3)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4) <u>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</u></p>	<p>제12조(비과세소득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커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) ~ 3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4) <u>6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
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  
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 
받는 금액으로서 해당  
자녀 1명당 월 20만원  
이내의 금액

5) (생략)

<신설>

자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5) (현행과 같음)

6)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 
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 
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 
받는 금액으로서 자녀 1  
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

자. (현행과 같음)